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858 호

제출년월일 : 2023년 4월 2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양천구로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환영의 의미를 담은 축하물품 및 구정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입세대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고 양천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양천구청장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천구로 신규 전입한 세대로 하되, 기존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4조)

다. 신청인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하며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고, 동장은 7일 이내에 물품을 지급하고 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예정
- 추산금액 : 56,000천원=〔(16,800세대*20,000원)/12개월〕*2개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3. 23. ~ 2023. 4. 1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천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입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입세대 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하의 전입축하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입세대가 양천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
2. 물품을 지원 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라 물품 지원 결정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세대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물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동장은 전입세대에 물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전입세대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회수 등)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 지원 적용례) 제4조의 물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양천구로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

□ 전입신고 사항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 수	
주 소				양천구 전입일자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연 락 처	

□ 담당자 확인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 여부 (양천구 거주이력 있을 경우 타 지자체로 전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는지 확인)	해당 ( ), 미해당 ( )
신청인 자격 충족여부 (전입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해당 ( ), 미해당 ( )

위와 같이 전입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천구 전입기록 및 신청인 자격 여부 확인	수수료 없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는 전입축하물품 지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전입축하물품 지급
2. 수집항목
   - 전입신고 사항(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원 수, 양천구 전입일자)
   -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3. 이용 및 보유 기간 : 지원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 검토 등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성명 : _____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세대주 및 신청인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성명 : _____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

연번	전 입 신 고 사 항				지급일	수령인	수불현황			
	전입일	전입 인원	주 소	세대주			품목	수령	지급	잔량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2858-1호

제출년월일: 2023년 5월 11일
제 출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시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2023년 7월 1일----------.